

## [2026년 변리사 시험 - 산업재산권법 총평 및 해설]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 김영남 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법 40문항 대부분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문제의 경우 조문이나 판례를 아주 치사하게 출제한 것이 있으나, 그 문제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中)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업재산권법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월말모의고사 5회분 + 전국모의고사 1회분), 그리고 기본강의에서 제공해드린 족지시험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어려움이 없이 고득점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문제의 경우 특허법과 교집합 부분에서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강조를 드리는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법에서 특허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습니다. 특허법 기본기가 튼튼할수록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 잘 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1차 수험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합격에 이르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교재와 강의에 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김영남 올림

【 문제 1 】

보기	정답 ④
①	[○]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7조의2)
②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제5호 : 청구의 취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특허법 제6조).
③	[○]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특허법 제10조 제1항).
④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제1호 :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8조).
⑤	[○]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10조 제4항).

【 문제 2 】

보기	정답 ②
①	[×]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특허법 제23조 제2항).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특허법 제23조 제3항).
②	[○]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16조 제1항).
③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제1호 :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17조).
④	[×]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제1호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특허법 제20조).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제20조 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1조).
⑤	[×]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특허법 제24조).

【 문제 3 】

보기	정답 ①
①	[거절 ×]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있어서, 다른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특허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분할출원 Z와 특허출원 Y의 출원일이 동일자 출원(2024. 8. 1.)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할출원 Z는 특허출원 Y에 대해서 확선의 지위가 없다. 또한 원출원 X는 출원공개(2024. 2. 1.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25년 8월 1일이 지난 후 출원공개)가 되기 전에 취하간주(2025. 2. 1.)가 되었으므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②	[거절 ○] 특허출원 Y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특허출원 X와 특허출원 Y의 출원인이 甲과 乙로 다르므로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예외(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출원 Y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된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③	[거절 ○] 특허출원 X는 출원일(2024. 2. 1.)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25. 8. 1. 이 지난 후에 출원공개되어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발생할 것이다. 설령 그 이후인 2026. 2. 1. 특허출원 X가 무효가 되더라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출원 Y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된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④	[거절 ○] 공지에의주장은 출원일이 소급되는 제도가 아니고, 당해 출원과 관계에서 당해 공지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특허법 제30조). 따라서 특허출원 Y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된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⑤	[거절 ○]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정에 의해서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Y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된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 문제 4 】

문제1	정답 ③
①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②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은 거절이유(특허법 제62조)이자 착오 등록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③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발명의 설명에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는 거절이유(특허법 제62조)에는 해당하나, 착오 등록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 제133조).
④	[○] 발명의 설명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나(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5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⑤	[○]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

	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 영 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
--	---

【 문제 5 】

보기	정답 ⑤
ㄱ	[O] 특허법 제56조 제1호
ㄴ	[O] 특허법 제56조 제2호
ㄷ	[O] 특허법 제56조 제2호
ㄹ	[O] 특허법 제56조 제3호
	<p><b>[특허법 제56조 제1항]</b></p> <p>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li> <li>2. 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li> <li>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li> </ol>

【 문제 6 】

문제1	정답 ⑤
①	[O]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②	[O]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③	[O]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④	[O] 발명과 동일한 물건이 매매, 도급 등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을 통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물건을 분해하거나 분석하여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면 그 물건이 양도됨으로써 양수인을 비롯한 불특정인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은 것이므로 발명이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특허법원 2017. 6. 16. 선고 2016허7947 판결).

⑤	<p>[X]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743 판결).</p>
---	--

**【 문제 7 】**

보기	정답 ①
①	<p>[X] 특허법 제224조의2는 특허요건 등에 관한 판단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불복을 행정심판법이 아닌 특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고, 한편 특허법은 제132조의17에서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사정을 받은 자에게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특허사정이 그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 특허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4274 판결).</p>
②	<p>[O] 공지의외 및 분할출원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각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이하 ‘원출원’이라고 한다)에서 공지의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의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의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p>
③	<p>[O]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다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p>
④	<p>[O] 원출원 중 일부 발명이 실시례 등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원출원 발명과 다른 하나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분할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후2778 판결).</p>
⑤	<p>[O]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특허법 제52조 제7항).</p>

**【 문제 8 】**

보기	정답 ②
ㄱ	<p>[O] 출원일(2024. 8. 1.)부터 1년 2월이 되는 날(2025. 10. 1.)과 제3자 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 받은 날(2025. 6. 1.)부터 3월이 되는 날(2025. 9. 1.) 중에서 빠른 날(2025. 10. 1.)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p>
ㄴ	<p>[X]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2024. 8. 1.)부터 3년이다(2027. 8. 1.). 조약우선권을 수반한 경우라도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시점이 소급되지 않는다.</p>

ㄷ	[X]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 : 심사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2028. 7. 1.)부터 2개월(2028. 9. 1.)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2027. 8. 1.)부터 1년(2028. 8. 1.)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67조의3 제1항). 따라서 2028. 8. 1.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ㄹ	[O]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제5호의2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제5호 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제84조 제1항).

**【 문제 9 】**

보기	정답 ③
①	[O]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제1호 :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특허법 제61조).
②	[O]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2026. 1. 15.)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2025. 12. 15.)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65조 제2항). 따라서 보상금청구권은 2025. 12. 15.부터 발생한다.
③	[X]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허된 후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④	[O]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특허법 제65조 제5항). 따라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설정등록일(2026. 6. 1.)부터 3년(2029. 9. 1.)까지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O] 보상금청구권에는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가 준용되므로, 乙의 물건 A는 甲의 발명2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특허법 제65조 제5항). 다만 제130조(과실추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 문제 10 】**

보기	정답 ④
ㄱ	[X]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무상이다(특허법 제103조).
ㄴ	[O]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유상이다(특허법 제103조의2).
ㄷ	[O] 중용권은 유상이다(특허법 제104조).
ㄹ	[O]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은 유상이다(제183조).
ㅁ	[X] 법정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그 후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제118조 제2항).

**【 문제 11】**

보기	정답 ④
①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 100조 제1항). 계약자유의 원칙상 전범위에 대한 실시권 설정도 가능하다.
②	[○]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③	[○]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④	[×] 전용실시권자도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특허법 제91조 제2호).
⑤	[○]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제1호 :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 문제 12】**

보기	정답 ④
①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27조 제2호).
②	[○]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132조 제1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32조 제4항).
③	[○]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④	[×]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특허법 제132조 제3항). 따라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도 그 자료가 제132조에 다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⑤	[○]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말한다. 이와 별개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과 관련하여 관례는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	---

【 문제 13 】

보기	정답 ①
①	[X]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32조의14 제2항).
②	[O]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특허법 제132조의6 제1항).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특허법 제132조의6 제2항).
③	[O]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④	[O]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특허법 제132조의8 제1항).
⑤	[O]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특허법 제132조의4 제4항).

【 문제 14 】

보기	정답 ②
①	[O]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②	[X]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③	[O]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④	[○]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명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⑤	[○]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후3394 판결).

【 문제 15 】

보기	정답 ⑤
①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②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27516 판결).
③	[×]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④	[×]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후10746 판결).
⑤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 문제 16 】

보기	정답 ④
①	[×]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특허법 제106조의2 제1항). 이 경우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제2호 :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제191조). 따라서 통상실시권자도 피고가 될 수 있다.
②	[×]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하 ‘침해대상제품’이라 한다)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본소) 판결).
③	[×]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특허법 제188조 제2항). 특허법 제187조 단서는 당사자계 심판이다. 이와 달리 결정계 심판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피고이므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지 않는다.
④	[○]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⑤	[×] 특허법은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심결 등에 대한 소에 대해서는 부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86조 제5항).

【 문제 17 】

보기	정답 ①
①	[×]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은 정정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②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특허법 제186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③	[○]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특허법 제186조 제6항).
④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 1054 판결).
⑤	[○]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원발명과 공통점 및 차이점의 인정과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출원인에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 2341 판결).

【 문제 18 】

보기	정답 ⑤
①	[×]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93조 제1항). 따라서 ‘도면’ 부분이 틀렸다.
②	[×]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제4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특허법 제192조). 특허법 제192조 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 따라서 지문의 경우 제194조 제4호에 따라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③	[×] 제197조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97조 제3항).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리사일 필요가 없다.
④	[×]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4호 : 제193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194조 제1항). 따라서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절차보완을 명하여야 하나,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방식위반을 이유로 보정명령이 가능하다(특허법 제195조 제4호).
⑤	[○]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96조 제2항).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특허법 제196조 제3항).

【 문제 19 】

보기	정답 ②
①	[×]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고안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실용신안법 제8조2의 제1항).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2 : 인공지능 또

	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대상이다(실용신안법 제15조 준용, 특허법 제61조 제2호).
③	[X]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30조의2 제1항).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④	[X]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실용신안법 제8조의2 제3항).
⑤	[X]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실용신안법 제36조 제1항). 지식재산처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실용신안법 제36조 제2항).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36조 제3항).

【 문제 20 】

보기	정답 ③
ㄱ	[X]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ㄴ	[O]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판결).
ㄷ	[O]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거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판결)..
ㄹ	[O]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

【 문제 21 】

보기	정답 ②
①	[×]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조 제5항).
②	[○]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조 제3항).
③	[×]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조 제2항). 지문의 내용 중 “만으로” 구성된 법인일 필요는 없다.
④	[×]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5호). 즉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⑤	[×]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조 제6항). 따라서 자기의 업무인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 문제 22 】

보기	정답 ①
①	[○] 기술적 표장이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그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상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제9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상표권자는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후774 판결).
②	[×] 제3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③	[×] 제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상표가 아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④	[×]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

	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⑤	[×]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곧 바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후1722 판결).

【 문제 23 】

보기	정답 ⑤
①	[○]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표법 제100조 제3항).
②	[○]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③	[○]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상표법 제104조).
④	[○]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상표법 제93조 제2항).
⑤	[×] 업무표장권,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상표법 제93조 제8항).

【 문제 24 】 ○

보기	정답 ④
①	[○]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②	[○] 권리가 소진된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③	[○]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④	[×]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

	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⑤	[○]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은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

【 문제 25 】

보기	정답 ④
①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11조 제1항).
②	[○] 상표법 제111조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③	[○]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④	[×]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은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⑤	[○]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으로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침해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추정과 달리 인정될 수가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침해자가 침해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다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문제 26 】

보기	정답 ①
①	[○]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또는 제214조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상표법 제148조 제1항).
②	[×]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표법 제162조 제3항).
③	[×] 제119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5호의2,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

	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상표법 제122조 제2항).
④	[×] 결정계 심판인 제166조의 경우에는 제142조(참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154조).
⑤	[×]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 문제 27 】

보기	정답 ③
①	[○]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요지변경)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상표법 제42조).
②	[○] 출원인은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상표법 제55조의2 제2항). 따라서 의견서의 제출은 필수가 아니다.
③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실제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거절결정이라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거절결정을 전제로 하는 재심사청구도 할 수 없다.
④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55조의2 제1항).
⑤	[○]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55조의2 제3항).

【 문제 28 】

보기	정답 ③
ㄱ	[×] 조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상표법 제46조 제3항). 따라서 우선권 주장은 출원시 하여야 한다.
ㄴ	[○]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은 정구성만 만족하면 된다. 따라서 출원일이 부여된 이상 그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있다.
ㄷ	[○]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증명서류 제출) 및 제5항(증명서류 부제출의 효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188조).
ㄹ	[×]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상표법 제45조 제3항).

【 문제 29 】

보기	정답 ⑤
----	------

①	[○] 제60조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상표법 제61조).
②	[○]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표법 제66조 제4항).
③	[○]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표법 제65조 제1항).
④	[○]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상표법 제63조).
⑤	[×] 거절이유가 이의신청이유가 되는데(상표법 제60조), 추가등록출원의 거절이유가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보다 많으므로(상표법 제54조, 상표법 제87조), 추가등록출원의 이의신청 이유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이의신청 이유보다 많다.

【 문제 30 】

보기	정답 ②
①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재심사 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193조의2)
②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상표법 제184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직권 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193조 제3항).
④	[×] 출원인은 제57조 제2항(제88조 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을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상표법 제58조 제1항).
⑤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 제3항(절차계속신청제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190조 제2항).

【 문제 31 】

보기	정답 ②
①	[○] 제4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조 제2항).
②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4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제4호 : 제119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또는 제120조(거절결정불복심판)에 따른 심판청구]의 행위를 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7조).
④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 따라서 보정은 필수이다.
⑤	[○]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1항).

**【 문제 32 】**

보기	정답 ②
①	[×]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제3호 :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디자인보호법 제22조). 이 경우 중단되는 것이지 중지되는 것이 아니다.
②	[○]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1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
③	[×]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1항).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2항).
④	[×]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디자인보호법 제25조 제1항). 이 경우 심사관의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⑤	[×] 제24조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24조 제5항).

**【 문제 33 】**

보기	정답 ⑤
①	[○]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는 원칙(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②	[○] “디자인” 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③	[○] 분상물의 집합으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구체성과 유체성을 구비하게 되므로

	디자인이 된다.
④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괄호
⑤	[×] 부동산이라도 유통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경우, 즉 반복생산가능성과 운반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품성이 인정된다.

【 문제 34 】

보기	정답 ①
①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디자인보호법 제13조 제1항). 즉 각자대표가 원칙이다.
②	[×]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4항 제1호). 즉 발송이지 도달이 아니다.
③	[×]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④	[×] 물품의 외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⑤	[×]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된다.

【 문제 35 】

보기	정답 ④
①	[○]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 화상디자인은 전체 디자인은 물론 부분디자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디자인보호법 제2호의2).
②	[○] 심사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③	[○] 심사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	[×] 구법에서는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의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의 부분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⑤	[○]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문제 36 】

보기	정답 ②
ㄱ	[×]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5항).
ㄴ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이미 물품류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186조 제2항).
ㄷ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75조 제1항).
ㄹ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73조 제6항).
ㅁ	[○]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제3호 : 조약에 위반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	-----------------------------------

**【 문제 37 】**

보기	정답 ⑤
①	[O]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
②	[O]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디자인보호법 제99조 제3항).
③	[O] 다음 각 호[제2호 :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98조 제1항).
④	[O]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98조 제2항).
⑤	[X]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2항).

**【 문제 38 】**

보기	정답 ⑤
①	[O]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
②	[O]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4항).
③	[O]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5항).
④	[O]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6항).
⑤	[X]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2 제3항).

**【 문제 39 】**

보기	정답 ③
①	[O]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
②	[O]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항).
③	[×]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④	[○]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7조).
⑤	[○]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디자인보호법 115조 제3항).

**【 문제 40 】**

보기	정답 ③
①	[○]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제1호 :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②	[○]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후단).
③	[×]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45조).
④	[○]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⑤	[○] 제42조 위반의 경우 거절이유에는 해당하나(디자인보호법 제62조), 착오 등록시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제121조).